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2026. 3.



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I. 개요	1
II.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개시 절차	2
III.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1. 출입 관리	
1-1.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4
1-2. 예방접종 미실시 출입제한.....	6
2. 위생 및 안전 관리	
2-1. 조리장 등에 칸막이·울타리 등 설치	7
2-2.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 통제	8
2-3. 식탁의 간격은 충분한 거리 유지.....	11
2-4. 음식류 제공시 뚜껑·덮개 등 사용.....	12
2-5.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 용품과 구분 사용·보관 등.....	13
2-6. 반려동물용 전용 쓰레기통 비치.....	14
3. 기타 위생관리.....	15
IV. 기타 참고자료	
붙임 1. 관련 규정	16
붙임 2. 주요 질의응답	19
붙임 3.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신규 영업신고 시).....	25
붙임 4. 사전검토 신청서(신규 및 기존 영업자).....	26
붙임 5. 체크리스트(신규 및 기존 영업자).....	27
붙임 6. 반려동물 동반 문화 예절 팻티켓.....	29

I. 개요

1. 목적

- ▶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
- ▶ 손님이 음식점등을 이용하는 동안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구체적 실행방법 안내

2. 관련 규정

-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8호
-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준수사항) 제7호
-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3. 적용 범위

- 업종 :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이하 “음식점등”이라 함)
-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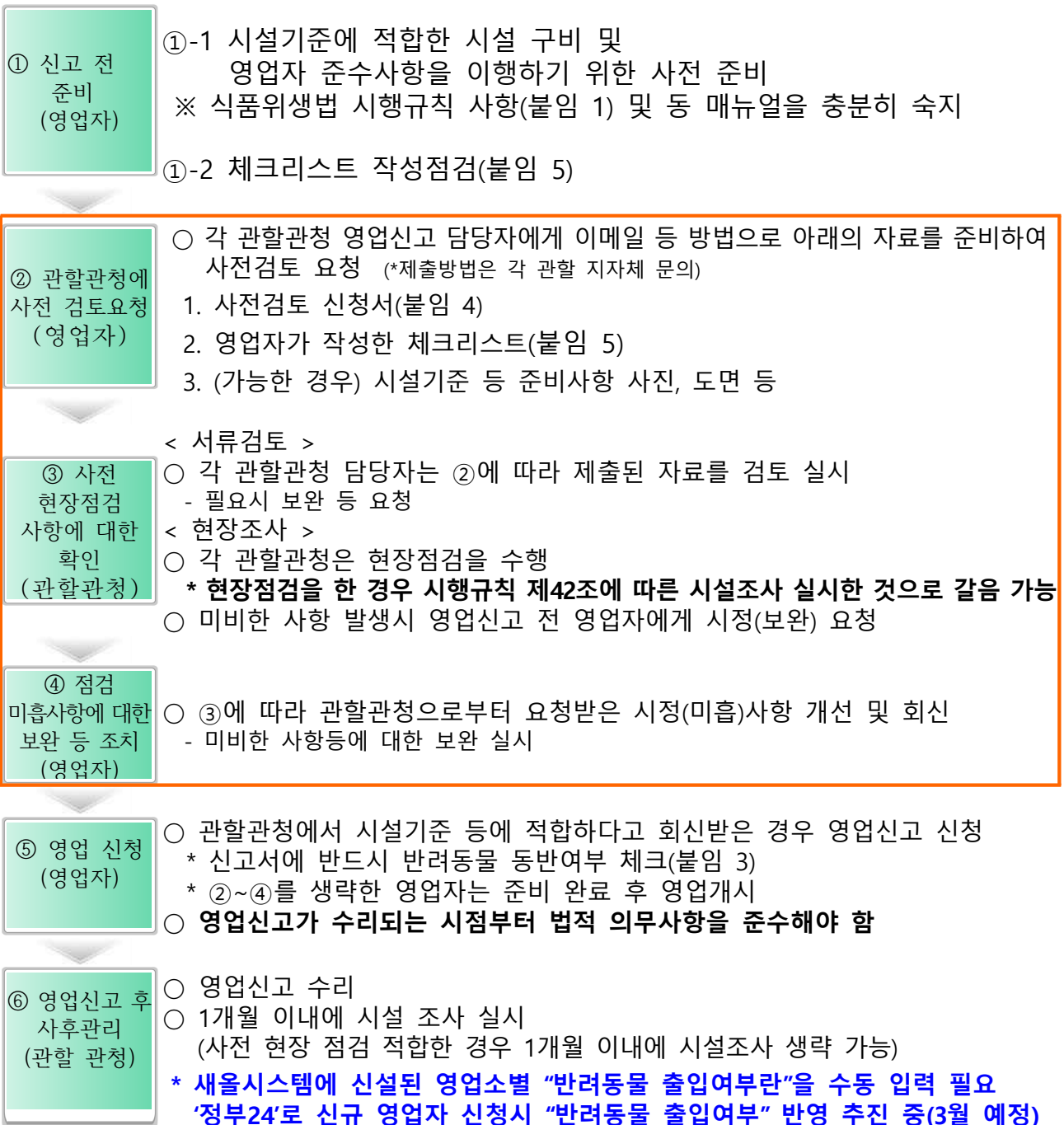
4. 기본 원칙

- 음식점등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
- 보호자가 음식점등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허용됨
 -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 등은 금지

Ⅱ.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개시 절차

Ⅰ 신규 영업 신고

-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은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써 신고전 사전확인(②~④)을 실시하여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
- √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사전확인(②~④)을 하지 않고 바로 신고가능
- * 다만, 신고수리 즉시 법적의무가 적용되므로 유의



㉒ 영업중인 음식점 등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개시 준비사항

- √ 기 영업중인 음식점등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바로 **사전확인(②~④)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나,
- √ 반려동물 출입 시점에서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개시전 **사전확인(②~④)을 실시하여**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

① 신고 전 준비 (영업자)

- ①-1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준비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준비하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사항(붙임 1) 및 동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준비
- ①-2 체크리스트 작성 점검(붙임 5)

② 관할관청에 사전 검토요청 (영업자)

- 각 관할관청 영업신고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 방법으로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여 사전검토 요청 (*제출방법은 각 관할 지자체 문의)
- 1. 사전검토 신청서(붙임 4)
- 2. 영업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붙임 5)
- 3. (가능한 경우) 시설기준 등 준비사항 사진, 도면 등

③ 사전검토요청 사항에 대한 확인 (관할관청)

- < 서류검토 >
- 각 관할관청 담당자는 ②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붙임 5에 따른 점검표로 확인 - 필요시 보완 등 요청
- < 현장조사 >
- 각 관청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시설조사 현장 점검을 수행
- 미비한 사항 발생시 보완 요청

④ 사전검토요청에 따른 보완 등 조치(영업자)

- ③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요청받은 시정(미흡)사항 개선 및 회신 - 미비한 사항등에 대한 보완 실시

⑤ 반려동물 동반출입개시 (영업자)

- 관할관청에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회신받은 경우 영업개시
- * ②~④를 생략한 영업자는 준비 완료 후 영업개시
-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적 의무 효력발생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⑥ 사후관리 (관할 관청)

- 사전검토를 실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 전산 반영
- 영업자 선택에 따라 ②~④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반려동물동반 출입이 확인된 경우 이를 전산 반영
- * **서울시스템에 신설된 영업소별 “반려동물 출입여부란”을 기존업체는 “반려동물 출입여부”를 수동 입력 필요**

Ⅲ.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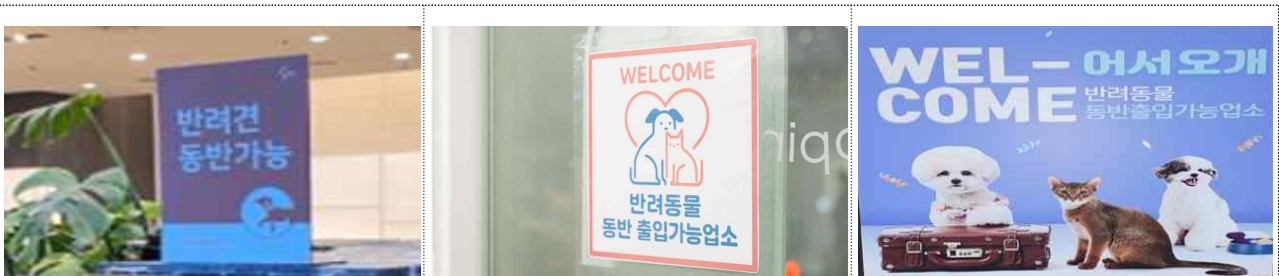
1 출입 관리

1-1.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등 표시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1)

-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 나)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제한)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게시
 - 손님이 음식점등 이용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하고,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누구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림(개, 고양이) 및 문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 영업소의 특성에 따라 글자의 크기, 색깔, 안내문의 크기 등은 자유롭게 하되, 잘 보이게 관리하여, 반려동물 출입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 메뉴판 등에 반려동물 출입여부를 표시하거나, 비반려인을 위해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하는 것도 바람직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등 표시(예시)

- 영업장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
- 예) 맹견출입금지, 대형견 출입 금지, 소형견 전용 음식점등



* ‘맹견’의 정의는 붙임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Q&A, Q2 참조

-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接客업소에 출입할 수 있음(단, 조리장, 보관시설은 거부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 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5.4.18. 공포, 2025.4.23. 시행>

1-2.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하기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10)**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 예방접종 여부는 예방접종 수첩 및 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
예) 원본이 아니더라도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p>■ 동물병원 발행문서 (별첨 제정(제시) <개정 2011.1.28>)</p> <p style="text-align: center;">예방접종 증명서</p> <p>동물 소유자 (관리인)</p> <p>성명 _____ 주소 _____</p> <p>종류 _____ 품종 _____</p> <p>이름 _____ 연령 _____</p> <p>성별 _____ 체중 _____</p> <p>접종 동물 특징 _____</p>	<p>· 반려견 Rabies</p> <table border="1"> <thead> <tr> <th>예방일</th> <th>접종일</th> <th>예방일</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 심방사상장</p> <table border="1"> <thead> <tr> <th>예방일</th> <th>구제일</th> <th>구제일</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접종수첩</p>	예방일	접종일	예방일																															예방일	구제일	구제일																															<p style="text-align: center;">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건강체크!</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 수첩 어플리케이션 Care for Companion! IntoPet 인투펫</p> <p>· 인투펫은 우리 병원의 권지채트와 케첩 연동되는 반려동물 전용 건강수첩입니다 · 간단한 내원내역과 백신내역, 미접종내역, 진료예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예방일	접종일	예방일																																																																		
예방일	구제일	구제일																																																																		
동물병원 발급 증명서(예시)	예방접종 수첩(예시)	모바일 예방접종 증명서(예시)																																																																		

2 위생 및 안전관리

2-1.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

◇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나목1)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2)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

- 칸막이·울타리의 재질, 높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영업장에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



조리장 출입 금지 장치(예시)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

- 칸막이·울타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고장여부 등을 상시 점검

2-2.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 통제 관리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3)**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알리고 그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게시할 것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4)**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장비·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할 것

가)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나)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을 말한다)

다) 별도의 전용공간

라)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5)**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손님이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영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① 반려동물은 이동이 금지됨을 고지하고 게시

②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금지 장치를 구비하고,

③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관리의무가 있음

* “이동”이란, 영업자가 제공한 장치/공간/장비를 벗어나 자유로이 움직이는 상태를 말함

< 예시 >

- ✓ 손님이 이동금지 장치에 반려동물을 두도록 안내
- ✓ 이동금지 장치를 사용하는지 확인
- ✓ 이동금지 장치가 작동되도록 수시 관리(고장여부 확인 등)
- ✓ 이탈 확인 시 즉시 통제하도록 손님에게 고지 및 조치

○ 반려동물 이동방지를 위해 다음의 장비 · 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 구비하여야 함

1. 반려동물 전용 식탁, 의자
2. 케이지
3. 목줄걸이 고정 장치
4. 별도의 전용공간* 활용

* 반려동물의 "이동 통제를 목적"으로 개별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구분된 식탁 공간 등)을 의미합니다.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5. 그밖에 이동금지 관리에 부합하는 방법

- 예시를 참조하되,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영업장의 다양한 시설(식탁에 고정, 기둥 이용 등)을 이용할 수 있음.(다만 손님이 해당 장비, 공간 또는 장치가 있음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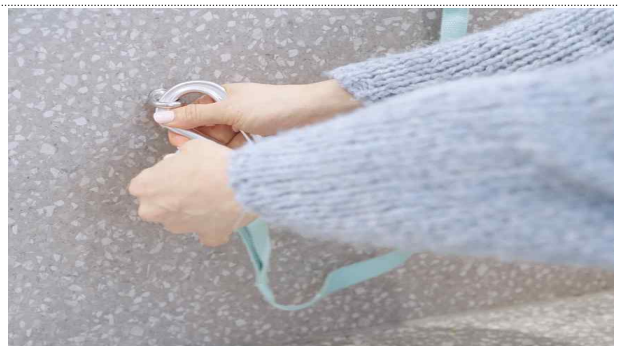
반려동물 전용의자(예시)



케이지(예시)



별도의 전용공간(예시)



목줄 고정장치 설비(예시)

<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관련 권고사항 >

-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으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영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시설 내 **자체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종사자 교육도 실시**
 - *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 권고(사고발생시 관할 경찰서, 동물 복지 관련 지자체 비상연락망 구축 등)
-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영업소 내부를 관리**
- 손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공격성 반려동물은 퇴거 등 조치
-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시설물(안전장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
 - 예)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는 세제 등 화학물질은 별도 공간에 보관, 울타리 등의 정상작동 여부, 시설물 부식, 날카로운 공간 등을 점검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개입, 응급처치 등 실시

2-3. 식탁의 간격은 충분한 거리 유지 필요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6)**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식탁의 간격은 충분히 유지

- 식탁 간격은 제한이 없으나, 영업장 공간을 고려하여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공간을 넉넉히 할 것

* 고정장치, 전용의자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식탁과 식탁간의 충분한 간격(예시)

2-4. 음료류 제공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뚜껑·덮개 등 사용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7)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 다)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 음식을 제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① 포장된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병제품, 개별 비닐포장된 빵 등
- ② 음식물을 제공할 때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예) ‘손님에게 뚜껑을 덮어드릴까요?’ 문의하였으나 손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③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손님이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뚜껑·덮개 제공(예시)



뚜껑·덮개 제공 예외(예시)

2-5. 반려동물 용품은 손님용 용품과 구분 사용·보관 및 표시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8)**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이 보관되는 장소나 해당 용품 등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사용**

* 가능하면 식기의 종류, 색상 등으로 구분하여 손님용과 혼용 방지

- 다회용기를 반려동물용 식기로 사용하는 경우, 세척 등 관리 과정에서 손님용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수세미·행주·세제 등을 별도로 사용하고, 손님용과 구분하여 세척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공간 마련(예시)

○ 반려동물용 용품과 보관 장소에는 각각 **‘반려동물용’** 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 장소’** 등을 명확히 표시할 것



반려동물용 표시(예시)

2-6. 반려동물 분변 등을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9)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

-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임을 표시
- 배설물, 매너벨트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폐기할 수 있도록 일회용 위생장갑, 봉투 등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



전용 쓰레기통(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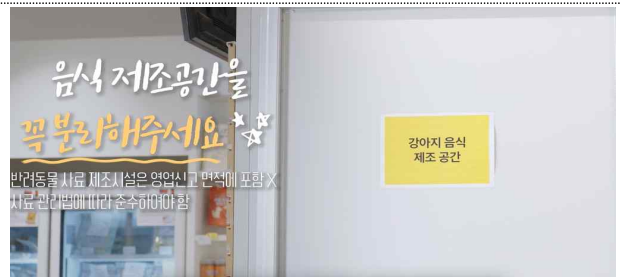
추가 비품 비치(예시)

3 기타 위생관리

- 주기적으로(2시간에 1회)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공기 청정기를 상시 가동
-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영업장(조리·보관 등 공간)과 분리하여야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등은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전 반드시 손 세척
- 종사자는 반려동물과 비접촉이 원칙이며, 부득이 접촉 시 접촉 전·후에 손을 씻고 소독하거나 위생장갑을 착용



주기적인 환기



별도의 조리공간

-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소독제* 등 비치



출입문 손소독제 설치(예시)

* 손이나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

- 소비자 안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권고

IV. 기타 참고자료

붙임 1

관련 규정

■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이 호의 나목1)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보. 별표 14 제8호가목1)나)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나)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3)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알리고 그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게시할 것

4)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장비·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할 것

가)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나)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을 말한다)

다) 별도의 전용공간

라)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5)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

6)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7)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다)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8)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이 보관되는 장소나 해당 용품 등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 9)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 10)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제10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3)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			
가) 별표 17 제7호보목2)부터 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가) 외의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Q1

**왜 개와 고양지만 출입가능한가요?
그 외 동물이 출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음식점은 많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 사람과 동물, 동물 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의 치료, 예방접종 등이 비교적 잘 연구 및 관리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였음
- 그 외 동물(돼지, 앵무새 등)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됨

Q2

맹견은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영업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맹견 등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출입문에 명확하게 게시하여야 함
 - *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견주(손님)의 책임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
- 이 외에도 영업소의 사정에 따라 대형견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관련 사실을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타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Q3

비반려인은 위생상, 건강상 우려가 있는데 관리방안은?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 알레르기 등으로 건강상 우려가 있는 손님등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음

○ 비반려인 등은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등을 확인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음

Q4

왜 3월 1일부터 시행인가요?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시설 설치 비용이 수반되고 준수사항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 영업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3월 1일 시행하도록 하였음

Q5

기존에 음식점등을 운영중인데, 시설기준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등 영업을 가능한지?

-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영업을 가능함
- 다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써 동 지침 Ⅱ-2의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 신청서(붙임 4) 및 체크리스트(붙임 5)를 작성하여 지자체 문의 후 운영하실 것을 권장함

Q6

영업장 전체가 아닌 객석 1개만 운영하려는데도 관련 규정을 다 지켜야 하나요?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영업장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손님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지켜야함
- 일부 객석만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일부 객석에 맞는 위생안전 기준 등을 준수하시면 됨

Q7

영업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영업장 내로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경우에 해당함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여 옥외공간이 영업장인 경우, 외부 영업장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함

Q8

영업장 내에서 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 음식점등은 음식을 섭취하는 곳으로 반려동물의 이동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임

Q9

반려동물의 목줄을 풀어두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왜 안되나요?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임
 - 음식의 위생·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만약, 반려동물간 놀이를 위한 공간을 원하시는 경우, 식품접객 업소와 분리(벽이나 층으로 구분)된 공간을 두어야 함

Q10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반려동물 출입 할 수 없도록 분리 또는 칸막이 설치외 줄이나 선으로 구분해도 되는지?

- 반드시 분리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함.

Q11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한다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가요?

- 목줄걸이 위치, 케이지 사용, 전용시설 사용 등 현장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식탁 간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반려동물의 이동을 막기 위한 장치, 영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식탁 간격을 정하여 운영하면 됨
- 예) 음식점 출입 반려동물은 모두 전용의자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목줄걸이를 사용하는 음식점보다 식탁 간격이 좁을 수 있음

Q12

**조리장 등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들어간 경우
처분기준은?**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5일 및 시설 개수명령의 처분을 하게 됨

Q13

**반려동물이 이동한 경우 영업정지 5일인데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도 처분받나요?**

- 반려동물 이동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 됨,
다만, 영업자가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제외될 수 있음

Q14

**왜 책임보험을 가입(권고)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에는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영업자 그리고 반려동물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함
 - 책임보험은 의무는 아니나, 사고위험 예방 및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자 스스로 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함
- 제도 운용 경과를 분석하여, 법적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겠음

Q15

손님에게 영업장 내 준수사항을 알려야 하나요?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의 위생·안전관리와 함께하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 [붙임 6]의 팻티켓을 참고하여 영업소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알리는 것을 권장함
- 예) 반려견에게 음식 주지 않기, 반려동물 접촉 전 허락 등

Q16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법령이 시행(2026.3.1일)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영업자에게 일괄 '시범사업 종료'를 알릴 예정임
- 규제샌드박스로 운영중인 영업자도 II.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개시 절차의 ② 영업중인 음식점 등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개시 준비사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청 후 운영하기를 권고드립니다

Q17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아닌데 손님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온 경우 무조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 식품접객업소는 동물 털 등 알레르기를 가진 손님, 어린이 등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 영업자는 위생·안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의무가 있음
- 다만, CCTV·소비자 확인 등을 통해 영업자가 출입금지 사실을 고지하는 등 통제의무를 수행하였거나, 소비자로 인한 무단·과실 출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행정조치에 고려될 수 있음

Q18

음식점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조치 하나만 갖춰도 되는지?

- “이동 제한 장비 등”은 매뉴얼 2-2에서 제시하는 장비 등 중 한가지 종류 이상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영업장에서 반려동물이 이용하는 공간(테이블, 전용공간 등)의 개수를 고려하여 구비하면 됨

Q19

영업장의 케이지안에 있는 반려동물만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 식품접객업소는 동물 털 등 알레르기를 가진 손님, 어린이 등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 완벽하게 동물의 털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의 케이지가 아니라면, 털 등 알레르기를 가진 손님이나 비반려인등도 해당 음식점에 “케이지 안에 있는 반려동물이 같은 공간에 있음”을 인지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케이지 안에 있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도록 하는 영업소”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로서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함
 - 다만, 해당 영업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출입구에 “케이지 안에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문구는 자물)”이 가능함을 게시, 예방접종 확인 및 미접종시 출입금지 실시하되,
 - 케이지 안에 있으므로 목줄, 전용 의자 등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등 “케이지 안”에만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이 가능함

Q20

음식점 내부에 반려동물만 있는 별도 분리공간이 있는 경우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해당하는지?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음식점의 영업장 내로 반려동물을 동반 출입하는 음식점으로서,
 - 음식점에 인접하였으나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간”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반려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는 경우 바로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공간은 음식점 영업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벽이나 층 등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의 털 등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 등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Q21

반려동물 예방접종 종류가 많은데 필수적으로 접종해야하는 종류가 있나요?

- 이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자보호와 반려동물간 감염예방을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다양한 손님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견병*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종합백신등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함

* ‘광견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다른 제2종 가축 전염병

Q2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유효기간에 관한 기준은?

-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 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책임이 있음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유관리방법 등
 - 따라서 반려동물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주기 등이 다양하여 주기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매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의 종류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출입 호텔, 동물위탁관리업(유치원) 등 다수의 반려동물이 밀집하는 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광견병, 종합백신, 켄넬코프** 등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최근 1년 이내 확인하는 사례도 있음
 - * 영업자는 예방접종 여부 고지 및 게시할 때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관리할 수 있음

Q23

반려동물 예방접종의 종류 확인시 자주 오시는 손님도 매번 확인해야 하나요?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도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여야 함.
 - 관리방법에서 처음 방문시 예방접종 증명서(사본, 전자증명서 등 포함)나 항체검사 확인서 등 반려동물이 예방접종했음을 확인하였을 경우, ‘손님과 반려동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체 관리 리스트를 활용하여 운영한다면 예방접종 확인 같음 가능
 - * 최초 이후 확인시 출입 관리대장 작성, QR 출입 증명서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붙임 3

식품接客업 영업신고서(서식) <신규 영업신고서 사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 [별표 23]

- 신규 영업신고를 하는 때, 아래 서식 앞쪽에 반려동물 여부를 표시하고, 접수받은 관할관청은 이를 시스템에 등록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용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니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식품자동판매기의 자동적인 혼합·처리 기능 여부 [] 해당 [] 미해당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한한다) 출입 여부 [] 해당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구 분	사전 검토 항목(III.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적부 (OX)	비고
출입관리 (III.1-1)	○ 외부 또는 출입구에 손님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등 게시 여부		
	○ 반려동물 출입 시 종류나 크기 등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게시 여부 ※ 예시) 맹견 출입금지 표시 여부 등		
출입관리 (III.1-2)	○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표시 여부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		
	○ 반려동물 출입시 예방접종 확인 및 미접종시 출입금지 실시 여부 - 접종 증명서, 접종 수첩 등으로 확인		
위생 및 안전관리 (III.2-1)	○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의 장치 설치 여부 -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함		
위생 및 안전관리 (III.2-2)	○ 음식점 등 내부에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금지 게시 여부 -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고지하여야 함		
	○ 음식점 등 내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등 구비 여부 (하나 이상 구비)		
	○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 실시 여부		
위생 및 안전관리 (III.2-3)	○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여부		
위생 및 안전관리 (III.2-4)	○ 음식물 진열·제공 시 반려동물의 털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 설치 및 관리 여부 (단, 다음의 사항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 -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 음식제공 시 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 - 제공받는 장소에 손님이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등 비치한 경우		

구 분	사전 검토 항목(III.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적부 (OX)	비고
위생 및 안전관리 (III.2-5)	○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은 ‘반려동물용’ 표시 및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 여부		
	○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 보관장소 ‘반려동물용’ 표시 여부		
위생 및 안전관리 (III.2-6)	○ 반려동물 전용쓰레기통 구비 - ‘반려동물용’ 쓰레기통임을 명확히 표시 여부		
기타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III.3)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 여부 ※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 및 운영 여부 확인		
	○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음식 제조·조리공간과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등은 구분관리 및 사용 여부 - 종사자는 반려동물과 비접촉이 원칙이며 부득이 접촉시 개인위생관리 철저 필요		
	○ 출입시 외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손소독제 등 비치 여부		
안전사고 예방·관리	○ 개물림, 반려동물 상호간 충돌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권고)
	○ 개물림 사고 발생 등 긴급시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 112신고 및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법 관련 부서 연락처 보유 여부		(권고)
<p>※ 검토 항목(권고사항 제외) 하나라도 ‘X’에 체크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p>			

202 . . .

점검자 :

서명(인)

- 반려동물 동반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친화시설 운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 반려동물 출입 영업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하는 예절과 규범을 의미하는 펫티켓(Petiquette)을 안내 및 홍보 필요



1. 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

구분	세부내용
기본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줄 착용 의무 · 과도한 짖음 통제 · 반려견 단독 방치 금지 · 발정기에 외부 활동 자제 · 배변 즉시 처리 의무 · 낯선 반려견 간 인사 지양 · 보호자로서 반려견에 집중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견 입마개 필수(동물보호법) · 여러 반려견이 있을 시 간식 또는 장난감 사용 주의 · 스트레스 신호 인지 · 위험 상황 예측/회피 · 건강 상태 확인(예방접종)
배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공포증 존중 · 비반려인 전용 공간 침범 금지 · 소음 최소화 · 시설물 오염/파손 주의
건강/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예방접종 완료 · 외부 기생충 관리 · 적절한 위생용품 지참

2.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

- 반려동물 친화시설 이용 시 반려동물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펫티켓 준수 필요

구분	세부내용
접근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접촉 전 허락 · 반려견에게 손을 뺀는 것 자제 · 갑작스런 소리/움직임 주의 · 함부로 반려견에게 음식 주지 않기 (알러지 등 문제 우려)
상호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시각·청각) 안내견 우선 배려 · 반려동물 전용 공간 인식 · 반려동물 구역 통과 시 배려 · 출입문 개폐 주의 · 놀이 중인 동물 방해 금지
알레르기/ 공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에게 사전에 알림 · 대체 좌석/객실 요청 · 과도한 불만 표출 자제 · 반려인 비난 대신 직원에게 요청
긴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 행동 시 침착 유지 · 갑작스런 움직임 자제 · 직원에게 즉시 알림 · 사고 발생 시 증인 역할